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김상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1. 8.

발 의 자 : 김상조, 김수민,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미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예술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제3조 ~ 제5조)
- 나.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의 심의·의결(안 제7조)
-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안 제8조)
- 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 19조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및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미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 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때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1.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